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3,908,289	13,917,249
일반회계	436,761,159	13,102,835
특별회계	27,147,130	814,414
공기업특별회계	4,894,139	146,824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4,894,139	146,824
기타특별회계	22,252,991	667,59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9,225	22,477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831,967	204,959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09,092	33,273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53,594	19,608
수질개선 특별회계	9,110,830	273,325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2,546,679	76,400
기반시설 특별회계	216,912	6,50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34,692	31,04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356,00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할 수 있다.